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2033720 부당이득금 반환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주식회사 B

피고, 피항소인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팽성진

제 1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합110128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13.

판 결 선 고 2020. 2.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1,818,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20. 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B(다음부터 '피고 회사'라 한다)은 308,954,8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②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각자 ①항에 적힌 돈 중 212,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71,860,60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212,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4면 16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다음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4면 21행~5면 13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1,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직원인 D, E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212,3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과 원고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당시 D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② D가 피고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142,5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보낸 당일인 2017. 1. 24.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15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같은 금액 상당의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계약서에는 원고 법인인감의 인영이 찍혀 있다.

③ 원고는, D와 E가 피고 회사로부터 합계 179,500,000원을 송금 받아 원고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액을 개인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반제의 방법으로 빼내어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아직까지도 D, E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 E가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빼내어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 회사가 D, E에게 합계 179,500,000원을 송금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들이 D, E의 가수금 처리 또는 반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④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부탁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와 관련하여 자금이 이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회사가 D, E에게 송금한 합계 179,500,000원의 실제 흐름이나 공급받는 자를 '원고', 공급가액을 '193,000,000원(부가가치세 19,300,000원은 별도)'으로 한 세금계산서(다음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등 자금의 이동을 전후하여 작성된 서류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7면 1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을 제2호증의 2, 3,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 "을 제2호증의 2, 3, 제3호증의 2, 제8, 9호증의 각 기재"

■ 제1심판결 이유 중 7면 12행 다음 : 아래 내용을 추가

"다만 회사인 원고와 피고 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법 제47조 제2항), 2017. 3. 3.자 37,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8면 21행~9면 1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그런데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부담할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에게 원금, 이자 등 전체 금액이 이미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원고는 2019. 11. 1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한 합계 212,300,000원에는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점을 더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청하면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2017. 4. 3. 피고 회사에 지급한 75,300,000원에는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불성실 신고 가산세 상당액인 23,246,109원(=부가가치세 19,300,000원 + 불성실 신고 가산세 3,946,109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9면 14행~10면 마지막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가) 갑 제2, 3, 6, 9호증, 을 제2, 3, 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아래 [변제 내역표]에 적힌 내용과 같은 피고 회사의 금전 대여와 이에 대한 원고의 변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가 2017. 4. 3. 피고 회사에 지급한 75,300,000원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불성실 신고 가산세 상당액인 23,246,109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대여금에 대한 원고의 2017. 4. 3.자 변제액은 52,053,891원(=75,300,000원 - 23,246,109원)이 된다]. 한편, 피고 회사의 2017. 1. 24.자 대여금 142,500,000원과 2017. 3. 3.자 대여금 3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¹⁾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이 존재한다는

1)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① 2014. 7. 15. 이전에 체결된 소비대차약정에 대한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② 2014. 7. 15.부터 피고 회사의 최종 대여일인 2017. 4. 4.까지 사이에 체결된 소비대차약정에 대한 법정

점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변제 내역표

(단위: 원)

원고의 변제금			피고 회사의 대여금		
순번	일자	금액	순번	일자	금액
1	2015. 7. 30.	20,000,000	1	2014. 5. 13.	20,000,000
2	2015. 11. 25.	10,000,000	2	2015. 4. 22.	22,000,000
3	2016. 1. 5.	2,250,000	3	2015. 9. 30.	15,000,000
4	2016. 2. 12.	2,250,000	4	2015. 10. 30.	30,000,000
5	2016. 2. 17.	30,000,000	5	2016. 3. 10.	67,800,000
6	2016. 3. 3.	1,500,000	6	2016. 5. 26.	30,000,000
7	2016. 3. 21.	15,000,000	7	2016. 6. 17.	66,200,000
8	2016. 3. 30.	15,750,000	8	2017. 1. 24.	142,500,000
9	2016. 6. 13.	87,800,000	9	2017. 3. 3.	37,000,000
10	2016. 6. 15.	6,950,000	10	2017. 4. 4.	50,000,000
11	2016. 7. 19.	3,800,000			
12	2016. 8. 16.	3,800,000			
13	2016. 9. 9.	10,000,000			
14	2016. 9. 21.	3,850,000			
15	2016. 10. 17.	3,800,000			
16	2016. 11. 16.	70,000,000			
17	2017. 2. 24.	7,500,000			
18	2017. 3. 3.	137,000,000			
19	2017. 4. 3.	52,053,891			
20	2017. 5. 8.	43,677,420			
합계		526,981,311	합계		480,500,000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지정충당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원이 가)항에서 인정한 원고의 변제금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변제 충당하면 그 결과는 별지2 변제 충당 내역표의 기재와 같고,²⁾ 결국 원고가 최종 변제일인 '2017. 5. 8.'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 초과 지급한 돈은 11,818,480원이 된다.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다.

2) 피고 회사는 2017. 3. 3. 원고로부터 137,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37,000,000원을 추가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7. 3. 3. 피고 회사에 지급한 137,000,000원은 2017. 3. 3.자 37,000,000원의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원금이나 이자에 변제 충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1,818,4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9. 15.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2020. 2.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피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행위로 간주되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급부의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한창

판사 손철우

판사 이재신

(수정된)거래내역

순번	거래일시	이자일수	입금금액(대출)	출금금액(상환)	종당 후 잔액	이자	증거
1	2015-04-22	0	22,000,000원	0원	22,000,000원	1,491,780원	갑 1의 4
2	2015-07-30	99	0원	20,000,000원	3,491,780원	148,281원	송금
3	2015-09-30	62	15,000,000원	0원	18,640,061원	383,014원	갑 1의 5
4	2015-10-30	30	30,000,000원	0원	49,023,075원	873,013원	갑 1의 5
5	2015-11-25	26	0원	10,000,000원	39,896,088원	1,120,369원	갑 1의 1
6	2016-01-05	41	0원	2,250,000원	38,766,457원	1,008,989원	송금
7	2016-02-12	38	0원	2,250,000원	37,525,446원	128,511원	갑 1의 1
8	2016-02-17	5	0원	30,000,000원	7,653,957원	78,636원	갑 1의 1
9	2016-03-03	15	0원	1,500,000원	6,232,593원	29,882원	갑 1의 3
10	2016-03-10	7	67,800,000원		74,062,475원	558,004원	갑 1의 6
11	2016-03-21	11	0원	15,000,000원	59,620,479원	367,523원	갑 1의 1
12	2016-03-30	9	0원	15,750,000원	44,238,002원	1,727,100원	갑 1의 1
13	2016-05-26	57	30,000,000원	0원	75,965,102원	936,556원	갑 1의 1
14	2016-06-13	18	0원	67,800,000원	9,101,658원	0원	갑 1의 2
15	2016-06-13	0	0원	20,000,000원	-10,898,342원	0원	갑 1의 1
16	2016-06-15	2	0원	6,950,000원	-17,848,342원	0원	갑 1의 1
17	2016-06-17	2	66,200,000원	0원	48,351,658원	0원	갑 1의 1
18	2016-07-19	32	0원	3,800,000원	44,551,658원	0원	송금
19	2016-08-16	28	0원	3,800,000원	40,751,658원	669,890원	송금
20	2016-09-09	24	0원	10,000,000원	31,421,548원	258,259원	갑 1의 1
21	2016-09-21	12	0원	3,850,000원	27,829,807원	0원	송금
22	2016-10-17	26	0원	3,800,000원	24,029,807원	493,763원	송금
23	2016-11-16	30	0원	70,000,000원	-45,476,430원	0원	갑 1의 2
24	2017-02-24	0	0원	7,500,000원	-52,976,430원	0원	송금
25	2017-05-08	0	0원	43,677,420원	-96,653,850원	0원	갑 9, 송금
	합계		231,000,000원	337,927,420원		10,273,570원	

변제 중당 내역표

사건번호 : 2019나2033720										총달구분 : 법정총달	
※ 채권 정보											
채권명	채권발생일	채권액(원)	최초 기상일	연 이율(%)	적용시기	적용 법규					
대여금	2014.05.13	20,000,000원	2014.05.13	30	2014.05.13	이자제한법					
대여금	2015.04.22	22,000,000원	2015.04.22	25	2015.04.22	이자제한법					
대여금	2015.09.30	15,000,000원	2015.09.30	25	2015.09.30	이자제한법					
대여금	2015.10.30	30,000,000원	2015.10.30	25	2015.10.30	이자제한법					
대여금	2016.03.10	67,800,000원	2016.03.10	25	2016.03.10	이자제한법					
대여금	2016.05.26	30,000,000원	2016.05.26	25	2016.05.26	이자제한법					
대여금	2016.06.17	66,200,000원	2016.06.17	25	2016.06.17	이자제한법					
대여금	2017.01.24	142,500,000원	2017.01.24	20	2017.01.24						
대여금	2017.03.03	37,000,000원	2017.03.03	6	2017.03.03	상법					
대여금	2017.04.04	50,000,000원	2017.04.04	25	2017.04.04	이자제한법					
※ 총달 정보											
변제일	변제액	원금(원)	적용 이율(%)	시작일	종료일	발생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누적액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총달	원금 총달	원금 잔액	
2015.07.30	20,000,000원	20,000,000 22,000,000	30 25	2014.05.13 2015.04.22	2015.07.30 2015.07.30	7,295,081 1,502,732	7,295,081 1,502,732	7,295,081 1,502,732	11,202,187 0	8,797,813 22,000,000	
2015.11.25	10,000,000원	8,797,813	30	2015.07.31	2015.11.25	850,936	850,936	850,936	6,236,546	2,559,267	
		22,000,000	25	2015.07.31	2015.11.25	1,773,224	1,773,224	1,773,224	0	22,000,000	
		15,000,000	25	2015.09.30	2015.11.25	584,016	584,016	584,016	0	15,000,000	
		30,000,000	25	2015.10.30	2015.11.25	553,278	553,278	553,278	0	30,000,000	
2016.01.05	2,250,000원	2,559,267	30	2015.11.26	2016.01.05	86,008	86,008	86,008	287,628	2,271,639	
		22,000,000	25	2015.11.26	2016.01.05	616,120	616,120	616,120	0	22,000,000	
		15,000,000	25	2015.11.26	2016.01.05	420,081	420,081	420,081	0	15,000,000	
		30,000,000	25	2015.11.26	2016.01.05	940,163	940,163	940,163	0	30,000,000	
2016.02.12	2,250,000원	2,271,639	30	2016.01.06	2016.02.12	70,755	70,755	70,755	440,175	1,831,464	
		22,000,000	25	2016.01.06	2016.02.12	571,038	571,038	571,038	0	22,000,000	
		15,000,000	25	2016.01.06	2016.02.12	389,344	389,344	389,344	0	15,000,000	
		30,000,000	25	2016.01.06	2016.02.12	778,698	778,698	778,698	0	30,000,000	
2016.02.17	30,000,000원	1,831,464	30	2016.02.13	2016.02.17	7,506	7,506	7,506	1,831,464	0	
		22,000,000	25	2016.02.13	2016.02.17	75,136	75,136	75,136	22,000,000	0	
		15,000,000	25	2016.02.13	2016.02.17	51,229	51,229	51,229	5,932,206	8,067,794	
		30,000,000	25	2016.02.13	2016.02.17	102,459	102,459	102,459	0	30,000,000	
2016.03.03	1,500,000원	0	30	2016.02.18	2016.03.03	0	0	0	0	0	
		0	25	2016.02.18	2016.03.03	0	0	0	0	0	
		8,067,794	25	2016.02.18	2016.03.03	92,907	92,907	92,907	1,099,716	7,968,078	
		30,000,000	25	2016.02.18	2016.03.03	307,377	307,377	307,377	0	30,000,000	
2016.03.21	15,000,000원	0	30	2016.03.04	2016.03.21	0	0	0	0	0	
		0	25	2016.03.04	2016.03.21	0	0	0	0	0	
		7,968,078	25	2016.03.04	2016.03.21	98,236	98,236	98,236	7,968,078	0	
		30,000,000	25	2016.03.04	2016.03.21	369,863	369,863	369,863	6,006,563	23,993,437	
2016.03.30	15,750,000원	67,800,000	25	2016.03.10	2016.03.21	557,260	557,260	557,260	0	67,800,000	
		0	30	2016.03.22	2016.03.30	0	0	0	0	0	
		0	25	2016.03.22	2016.03.30	0	0	0	0	0	
		0	25	2016.03.22	2016.03.30	0	0	0	0	0	
2016.03.30	15,750,000원	23,993,437	25	2016.03.22	2016.03.30	147,904	147,904	147,904	15,184,151	8,809,286	
		67,800,000	25	2016.03.22	2016.03.30	417,945	417,945	417,945	0	67,800,000	
		0	30	2016.03.31	2016.06.13	0	0	0	0	0	
		0	25	2016.03.31	2016.06.13	0	0	0	0	0	
2016.06.13	87,800,000원	0	25	2016.03.31	2016.06.13	0	0	0	0	0	
		8,809,286	25	2016.03.31	2016.06.13	452,531	452,531	452,531	8,809,286	0	
		67,800,000	25	2016.03.31	2016.06.13	3,482,876	3,482,876	3,482,876	67,800,000	0	
		30,000,000	25	2016.05.26	2016.06.13	390,410	390,410	390,410	6,964,897	23,135,103	
2016.06.15	5,950,000원	0	30	2016.06.14	2016.06.15	0	0	0	0	0	
		0	25	2016.06.14	2016.06.15	0	0	0	0	0	
		0	25	2016.06.14	2016.06.15	0	0	0	0	0	
		0	25	2016.06.14	2016.06.15	0	0	0	0	0	
2016.06.15	5,950,000원	23,135,103	25	2016.06.14	2016.06.15	31,691	31,691	31,691	6,918,309	16,216,794	
		0	30	2016.06.16	2016.07.19	0	0	0	0	0	
		0	25	2016.06.16	2016.07.19	0	0	0	0	0	
		0	25	2016.06.16	2016.07.19	0	0	0	0	0	
2016.07.19	3,800,000원	0	25	2016.06.16	2016.07.19	0	0	0	0	0	
		0	25	2016.06.16	2016.07.19	0	0	0	0	0	
		0	25	2016.06.16	2016.07.19	0	0	0	0	0	
		0	25	2016.06.16	2016.07.19	0	0	0	0	0	
2016.07.19	3,800,000원	16,216,794	25	2016.06.16	2016.07.19	377,651	377,651	377,651	1,926,049	14,290,746	
		66,200,000	25	2016.06.17	2016.07.19	1,496,301	1,496,301	1,496,301	0	66,200,000	
		0	30	2016.07.20	2016.08.16	0	0	0	0	0	
		0	25	2016.07.20	2016.08.16	0	0	0	0	0	
2016.08.16	3,800,000원	0	25	2016.07.20	2016.08.16	0	0	0	0	0	
		0	25	2016.07.20	2016.08.16	0	0	0	0	0	
		0	25	2016.07.20	2016.08.16	0	0	0	0	0	
		0	25	2016.07.20	2016.08.16	0	0	0	0	0	
2016.08.16	3,800,000원	14,290,746	25	2016.07.20	2016.08.16	274,069	274,069	274,069	2,256,342	12,034,404	
		66,200,000	25	2016.07.20	2016.08.16	1,269,589	1,269,589	1,269,589	0	66,200,000	

2016.09.09	10,000,000원	0	30	2016.08.17	2016.09.09	0	0	0	0	0
		0	25	2016.09.17	2016.09.09	0	0	0	0	0
		0	25	2016.08.17	2016.09.09	0	0	0	0	0
		0	25	2016.08.17	2016.09.09	0	0	0	0	0
		0	25	2016.08.17	2016.09.09	0	0	0	0	0
		12,034,404	25	2016.08.17	2016.09.09	197,825	197,825	197,825	8,713,956	3,320,448
		66,200,000	25	2016.09.17	2016.09.09	1,088,219	1,088,219	1,088,219	0	66,200,000
2016.09.21	3,850,000원	0	30	2016.09.10	2016.09.21	0	0	0	0	0
		0	25	2016.09.10	2016.09.21	0	0	0	0	0
		0	25	2016.09.10	2016.09.21	0	0	0	0	0
		0	25	2016.09.10	2016.09.21	0	0	0	0	0
		0	25	2016.09.10	2016.09.21	0	0	0	0	0
		3,320,448	25	2016.09.10	2016.09.21	27,291	27,291	27,291	3,278,600	41,848
		66,200,000	25	2016.09.10	2016.09.21	544,109	544,109	544,109	0	66,200,000
2016.10.17	3,800,000원	0	30	2016.09.22	2016.10.17	0	0	0	0	0
		0	25	2016.09.22	2016.10.17	0	0	0	0	0
		0	25	2016.09.22	2016.10.17	0	0	0	0	0
		0	25	2016.09.22	2016.10.17	0	0	0	0	0
		0	25	2016.09.22	2016.10.17	0	0	0	0	0
		41,848	25	2016.09.22	2016.10.17	745	745	745	41,848	0
		66,200,000	25	2016.09.22	2016.10.17	1,178,904	1,178,904	1,178,904	2,578,503	63,621,497
2016.11.16	70,000,000원	0	30	2016.10.18	2016.11.16	0	0	0	0	0
		0	25	2016.10.18	2016.11.16	0	0	0	0	0
		0	25	2016.10.18	2016.11.16	0	0	0	0	0
		0	25	2016.10.18	2016.11.16	0	0	0	0	0
		0	25	2016.10.18	2016.11.16	0	0	0	0	0
		0	25	2016.10.18	2016.11.16	0	0	0	0	0
		63,621,497	25	2016.10.18	2016.11.16	1,307,291	1,307,291	1,307,291	63,621,497	0
2017.02.24	7,500,000원	0	30	2016.11.17	2017.02.24	0	0	0	0	0
		0	25	2016.11.17	2017.02.24	0	0	0	0	0
		0	25	2016.11.17	2017.02.24	0	0	0	0	0
		0	25	2016.11.17	2017.02.24	0	0	0	0	0
		0	25	2016.11.17	2017.02.24	0	0	0	0	0
		0	25	2016.11.17	2017.02.24	0	0	0	0	0
		142,500,000	20	2017.01.24	2017.02.24	2,498,630	2,498,630	2,498,630	5,001,370	137,498,630
2017.03.03	137,000,000원	0	30	2017.02.25	2017.03.03	0	0	0	0	0
		0	25	2017.02.25	2017.03.03	0	0	0	0	0
		0	25	2017.02.25	2017.03.03	0	0	0	0	0
		0	25	2017.02.25	2017.03.03	0	0	0	0	0
		0	25	2017.02.25	2017.03.03	0	0	0	0	0
		0	25	2017.02.25	2017.03.03	0	0	0	0	0
		137,498,630	20	2017.02.25	2017.03.03	527,392	527,392	527,392	136,466,526	1,032,104
		37,000,000	6	2017.03.03	2017.03.03	6,082	6,082	6,082	0	37,000,000
2017.04.03	52,063,891원	0	30	2017.03.04	2017.04.03	0	0	0	0	0
		0	25	2017.03.04	2017.04.03	0	0	0	0	0
		0	25	2017.03.04	2017.04.03	0	0	0	0	0
		0	25	2017.03.04	2017.04.03	0	0	0	0	0
		0	25	2017.03.04	2017.04.03	0	0	0	0	0
		0	25	2017.03.04	2017.04.03	0	0	0	0	0
		1,032,104	20	2017.03.04	2017.04.03	17,531	17,531	17,531	1,032,104	0
		37,000,000	6	2017.03.04	2017.04.03	188,547	188,547	188,547	37,000,000	0
		44,928,788	25	-	2017.04.03	0	0	0	13,815,709	31,113,079
2017.05.08	43,877,420원	0	30	2017.04.04	2017.05.08	0	0	0	0	0
		0	25	2017.04.04	2017.05.08	0	0	0	0	0
		0	25	2017.04.04	2017.05.08	0	0	0	0	0
		0	25	2017.04.04	2017.05.08	0	0	0	0	0
		0	25	2017.04.04	2017.05.08	0	0	0	0	0
		0	25	2017.04.04	2017.05.08	0	0	0	0	0
		0	20	2017.04.04	2017.05.08	0	0	0	0	0
		0	6	2017.04.04	2017.05.08	0	0	0	0	0
		31,113,079	25	2017.04.04	2017.05.08	745,861	745,861	745,861	31,113,079	0